



군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GunSan Social Economy Center



협동조합 설립절차

5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군산시장에게 신고를 거쳐 설립



설립신고 신청서류

1. 설립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2. 정관사본
3. 창립총회개회 공고문
4.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5. 임원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6.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7. 수입-지출예산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8.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설립 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5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가를 거쳐 설립



설립인가 신청서류

1. 설립인가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2. 정관사본
3. 창립총회개회 공고문
4.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5. 임원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6.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7. 수입-지출예산서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8.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설립 시)
11. 주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



☎ 군산시 중정길 8-1
☎ 063. 443. 5437
🌐 gunsansec.or.kr
✉ gsec20205@gmail.com

권리에도 지원기관

(사)전북사회적경제지원대학의 063.213.2244

중앙 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www.socialenterprise.or.kr

협동조합 홈페이지 www.coop.go.kr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 7대 원칙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성(性)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 있는 조직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조합원들은 정적수립과 의사결정에 참여,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 책임을 갖고 봉사
-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운영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 민주적으로 통제
-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4 자율과 독립

-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함

5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 국·내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하여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조합원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협동조합 유형

형태	유형	
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공동구매 또는 서비스의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직원이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개별 사업자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공동판매, 공동자재구매, 공동브랜드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경영개선 및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협동조합의 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 (법 제2조제 5호)	

사회적협동조합 주 사업유형

- 다음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수행
- 주 사업이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이어야 함

지역사업형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위탁사업형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기타 공익증진형

그 밖에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협동조합과 타법인

구분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단법인
근거법률	상법	협동조합기본법	민법
사업목적	이윤 극대화	조합원 실익 증진	공익 증진
운영방식	1주 1표	1인 1표	1인 1표
설립방식	신고	신고 또는 인가	허가
책임범위	유한책임	유한책임	해당없음
성격	물적결합	인적결합	인적결합
사업예시	일반 경제활동 분야	금융·보험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사업 분야	학교, 병원,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구분	사회적협동조합
법인	법인격	비영리법인
군산시장 신고	설립	주사업 소관부처 인가
금융·보험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사업 분야	사업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조합원 수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 총액 30억원 이상 또는 우선출자발행 협동조합만 해당	경영공시	의무사항
잉여금의 10/100 이상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30/100 이상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가능	배당	불가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청산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직권 또는 신고에 따른 조사, 시행명령	감독	조사 및 시행명령 인가요건 위반 시 인가 취소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구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적용법령	사회적기업육성법
인가제(법인격부여)	제도성격	인증제(자격을부여)
주사업 소관부처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비영리	법인성격	영리와 비영리 포함
배당불가	이윤	배분 가능한 이윤발생 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협동조합 운영 효과

경제주체별 효과

“소비자의 편익증가, 생산자의 안정적 수익 보장,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 해결 등 각 경제주체의 만족도 증가”



소비자조합 등과 연계하여 직거래 및 사전 계약제에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생산량 보장

직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고용 불안정 문제해결 및 임금수준 향상 기대 등

사회·경제적 효과

“기존 복지체계에 의료, 돌봄 등 사회서비스의 민간 참여 확대 및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

- 사회적 효과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시스템 보완 및 일을 통한 복지에 기여
- 경제적 효과 :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안정, 경제위기 시 경제 안정 효과 기대



기 타

“민주적 운영(1인1표)에 따른 조합원의 의사결정 참여 보장”

-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의 만족감 제고
- 조합원의 주인 의식 향상